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18531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387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18531 판결

전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7. 6. 8.

판결 선고 2017. 6.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산공장과 관련한 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10. 주식회사 보광이엔씨(이하 '보광이엔씨'라 한다)와, 원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공장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6.5. 31.까지로 정하여 보광이엔씨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보광이엔씨는 2015. 3. 10. 피고와,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7억 7,000만 원,보증기간 2015. 3. 10.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1 피고는 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1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나. 도급계약의 해지 및 공사 타절

- 1) 보광이엔씨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5. 5. 30. 공사를 중단한 후 2015. 6. 1. 원고에게 '재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보광이엔씨에게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2) 원고와 보광이엔씨는 2015. 6.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기성공사대금을 34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타절 합의하였다.
 1. 보광이엔씨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시점까지의 기성고 금액은 3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정하고, 위 기성고 금액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2. 보광이엔씨는 당시까지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경비, 하도급대금 등 모든 비용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3. 보광이엔씨는 본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본 합의서에 의한 합의사항 외의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법률 등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새로운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8. 28.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일진건설'이라 한다)와,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69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5. 8. 31.부터 2016. 8.31.까지로 정하여 일진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5. 9. 9. 보광이엔씨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해 합계6,174,634,84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 770,000,000원의 보증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304,215,000원만을 실제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2. 5. 위 돈을 일단 수령하되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는 소로써 다툼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304,2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보광이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는 위공사 중단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수급인을 구하여 공사를 새로 시작하기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완공 지연으로 원고는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합계926,151,39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1).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진건설과 사이에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시 DPS실 설치공사 및 일부 수량 변화를 제외하고는 내역이 동일함에도 기존의 공사대금보다

92,618,600원[=7,382,018,600원(=일진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7,590,000,000원-임시 DPS실 설치공사비 207,981,400원2)-7,289,400,000원(=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7,700,000,000원-이 사건 공사 타절금액 380,600,000원-설계비용

30,000,000원)]이 증가하였다.

② 원고는 중단된 공사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광이엔씨를 대신하여 그 하수급인들에게 총 327,800,000원[=하도급금 합계 287,800,000원+주식회사 엠에이피구조건축사사무소(이하 '엠에이피'라 한다)에 대한 설계비용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3개월 동안 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합계23,252,330원[=C, D에 대한 급여 22,361,330원+웅덩이 메꿈 포크레인 사용 비용495,000원+녹 제거비용 396,000원]을 지출하였다.

④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의약품 바코드 부착 작업(Digital PickingSystem, 이하 'DPS'라 한다)을 실시할 DPS실을 원래 설계도면에서 설치하기로 예정된곳과 다른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여야 했고, 그 후 공사가 완공되어 설계도면대로 DPS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DPS 설비를 새로 설치된

DPS실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임시 DPS실 설치 및 이전비용 합계 229,379,900원(=일진건설과의 도급계약상 임시 DPS실 설치공사비용 223,379,900원+DPS 설비 이전비용 6,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⑤ 원고는 2013년부터 매출 증가 추세에 있는 의약품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보광이엔씨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완공이 지연되어 예정된 생산량을 모두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원고의 2013년 내지 2016년의 생산실적 내지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계산하면 합계 267,899,062원[=생산실적 미달액 2,761,846,000원(=2016년 4분기 예상 생산실적 26,486,179,000원3)-2016년 4분기생산실적 23,724,333,000원)×당기순이익률 9.7%4), 원 미만 버림]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서 정한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손해액이 보증한 도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465,785,000원(=보증한도액770,000,000원-기지급금 304,2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보광이엔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공사 중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특별손해로서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보증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보광이엔씨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5. 6.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계약보증약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한도로 원고(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금액을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과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과 관련한 조항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별로 원고가 보광이엔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공사대금 증액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보광이엔씨와 기성금을 346,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일진건설과 공사대금을 6,900,0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일진건설과의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않던 임시 DPS실 설치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공사대금이 223,379,9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원고가 공사 중단 이후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을 계산하면 22,620,100원[=6,676,620,100원(=일진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6,900,000,000원-임시 DPS실 설치공사비 223,379,900원)-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6,654,000,000원(=7,000,000,000원-346,000,00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대금 증액분22,620,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현장정리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5. 8.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보광이엔씨와 거래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철거공사비용, 탄소보강공사비용, 철골공사비용, 덕트공사비용, 안전용품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87,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보광이엔씨, 엠에이피는 2015. 10. 1. 엠에이피가 보광이엔씨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을 설계용역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보광이엔씨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50,909,09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10. 16. 엠에이피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 21,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가 보광이엔씨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돈 중 ① 피고가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하는 275,300,000원(2017. 1. 17.자 준비서면),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안전용품구입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성안전에 지급한 1,500,0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용역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엠에이피에 지급한 40,000,000원[피고는 위 설계용역계약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계약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보광이엔씨 사이의 2014. 6. 18.자 설계용역계약서에는 제5조(용역대금)에서 '보광이엔씨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용역대금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갑 제22호증)'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보광이엔씨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작성한 타절기성내역(을 제1호증)에는 설계용역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더한 합계 316,800,000원은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태산공조설비에 지급한 덕트공사비용 1,100만 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태산공조설비가 덕트공사의 사전 작업으로 집진기 및 열교환기를 이전해 놓은 상태에서 보광이엔씨가 부도가 나자 공사 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바람에 보광이엔씨를 대신하여 덕트공사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태산공조설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덕트공사의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을 뿐 덕트공사 자체를 실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보광이엔씨가 태산공조설비에 덕트공사비용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금 지급 경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산공조설비에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합의금 상당의 손해가 이 사건 공사 중단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보광이엔씨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보광이엔씨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보광이엔씨와 거래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316,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현장관리비용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1.부터 2016. 1.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인 2015. 4. 13.부터 2016. 5. 31.까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도 2015. 5. 30.이므로, C가 이 사건 공사내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현장관리를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 역시 보광이엔씨에 2006. 3. 1. 입사한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C와 D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면, 갑 제30, 31, 45호증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C, D에 대한 인건비가 이 사건 공사중단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2, 40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15. 5. 31. E에 포크레인사용료로 지급한 495,000원이 이 사건 공사 중단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철근 녹제거비용 3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인해 지출한 현장관리비용 3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4) 임시 DSP실 설치와 관련한 비용

가) 임시 DPS실 설치비용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DPS실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DPS 작업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원래 설치를 예정하였던 곳에 DPS실을 설치할 수 없어 그 무렵 비어 있던 장소에 임시로 DPS실을 설치하였고, 원래 예정된 장소에 DPS실 설치가 완성된 후에는 임시 DPS실에 있던 DPS 설비를 DPS실로 이전하고, 임시 DPS실은 기존에 설치한 공조기, 배관덕트 등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사를 거쳐 측량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임시 DPS실 설치공사비용이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시 DPS실에 설치된 공조기, 배관덕트 등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외에는 그 경위에 관하여 크게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임시 DPS실 설치공사를 실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갑 제50, 53, 5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PS실은 완제품인 의약품에 대해 바코드 부착 작업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원료를 배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측량실과는 공간에 필요한 청정도, 공간 내부의 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임시 DPS실에 설치된 공조기 및 배관덕트 등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철거한 후 새로이 측량실 공사(임시 DPS실이 설치된 공간은 원래 측량실로 공사가 예정된 공간이었다)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초 예정된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로 작업 공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수급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 점(이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증액분은 약 2,200만 원으로 총 공사대금에 비하여 그 액수가 미미한바, 이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임시 DPS실 설치공사비용이 별도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광이엔씨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제1조 제1항), 임시 DPS실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실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보증계약의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 DPS실 설치공사비용은 이 사건 공사 중단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공사비용이 223,379,900원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임시 DPS실 설치공사비용 223,379,9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DPS 설비 이전비용

또한 원고는 임시 DPS실에 설치된 DPS 설비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DPS실로 이전하였고, 그 이전비용으로 2016. 5. 10. 주식회사 아세테크에 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던바, 위와 같이 지급한 600만 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해 DPS 설비 이전비용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5) 영업손실

원고는 2013년 내지 2016년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나름의 기준에 따라 영업손실액을 산정하였으나, 갑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합계 267,899,062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합계

결국 원고가 보광이엔씨가 공사를 중단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은 합계 569,160,000원(=공사대금 증가분 22,620,100원+현장정리비용 316,800,000원+현장관리비용 360,000원+임시 DPS실 설치비용 223,379,900원+DPS 설비 이전비용 6,000,000원)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보증금 271,859,000원[=실제 손해액 569,160,000원-기지급 보증금 297,301,000원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기상, 판사 전명재, 판사 강민수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바, 2016. 10. 31.자 준비서면, 2016. 12. 1.자 준비서면 및 2017. 2. 28.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장을 정리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8.자 준비서면에서 임시 DPS실 설치공사비용은 223,379,9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는 부분으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절기성금액에 이미 설계비용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설계비용을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피고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여 손해액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2016. 10.3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손해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3) 2016년 1~4분기 예산 생산실적인 96,326,467,000원¹⁾(=2016년 1~3분기 생산실적 69,840,288,000원÷2015년 1~3분기 생산실적60,723,654,000원×2015년 총 생산실적 83,762,146,000원, 산식을 계산하면 96,337,621,582원이지만 원고가 2016. 12. 1.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대로 기재하였다)에서 2016년 1~3분기 생산실적 69,840,288,000원을 뺀 금액이다.

4) 2013년 당기순이익 6,061,785,947원, 2014년 당기순이익 6,816,293,231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율이다. 구체적인산식은 2013년, 2014년 당기순이익 합계 12,878,078,178원÷2013년, 2014년 생산실적 합계 132,459,181,000원이다.

5) 기지급 보증금 304,215,000원에서 원 · 피고가 모두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인정하는 안정성시험 위탁비용에 관하여 지급된6,914,000원의 보증금을 제외한 돈이다.